

「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11월 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11월 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경제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6조)
 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 1부. 끝.

「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3. 10. 23.
- 회부일자 : 2023. 11. 7.

## 2. 제안이유

-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6조)  
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## 4. 검토내용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서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시,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9조제4항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하여 운용중인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 운용하고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존속기한) 중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(현행) 2023년 12월 31일에서 (개정)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것을 명시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마을 소득증대사업, 공공복지사업 등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이고,
-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<sup>1)</sup>를 거쳤으므로 사전 행정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,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,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--

1) '23년 제3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'23. 9. 19. ~ 20.)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#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 제안이유

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 2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(조례안 제6조)

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
## 3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

2)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9. 14. ~ 2023. 10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존속기한)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를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6조(존속기한) ----- 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.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## 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6조의2(지원금의 관리 등)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조 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5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. <개정 2011. 3. 30.>

③ 제10조 제1항 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(出捐)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 
제3조제5항제1호
3. 미첨부 사유 :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 남 섭
연락처	(033) 330 - 2540